



학교폭력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활동에 협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알차고 참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 또한 꼭 필요합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변경사항 및 이번 9월 1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변경사항 (23. 4. 12.)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처분)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
2.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2026년 대학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
3. 18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23. 9. 1.)

| 개 정 사 항 | 주 요 내 용 |
|--------------------------|---|
| ■ 피·가해학생 분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해자 분리 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변경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호(일시보호) 또는 제17조제4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제6호(출석정지)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분리 기간 자동 종료 |
| ■ 가해학생 학적 변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점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 완료 시점까지 학적변동 제한이 원칙이나 ② 2023.9.1.이후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경우 우선 전학하게 됨.(※7일 이내 학교장이 배정받을 학교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함.) ③ 전학 조치 외 부과된 기타 가해학생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는 전학 전 원적교에서 일부 혹은 전학 후 전출교에서 이행 완료 |
|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신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변경. (교육장). '심판·소송 참가'를 통해 의견 제시가 가능함. ② 가해학생의 불복 주장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목적 |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아이의 말을 귀담아들어 주세요.
 (아이에 따라서는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여러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쉽지 않겠지만, 아이와 함께 흥분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한 말을 중심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 전화를 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도 상담 전화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화를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1) 담임선생님의 중재하에 학생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2)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되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접수를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라고 학교(선생님)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선택하셨을 경우 담임선생님과 자녀분을 믿고 문제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부모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2) 사안이 심각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맡기고자 할 때는 아래 제시되는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 1. 사안 처리 절차(요약) | | |
|--------------------------|--|-----------------------------|
| 구분 | 47지 유무 조사 | 심의 |
| 학교폭력 사안접수 | -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폭전담기구) 학교장 자체 해결 |
| |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심의 |
| 2.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전담기구 심의) | |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2020. 3. 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이 이관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가.피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함)

3-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안내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였습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4. 재심 절차의 일원화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재심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교육 . 선도 조치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
|---|-----------------------------------|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2호: 일시보호 |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제4호: 사회봉사 | 제4호: 학급교체 |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5호: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
| 제6호: 출석정지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
| 제7호: 학급교체 | 필요한 조치 |
| 제8호: 전학 | |